

학부 구조조정 규정

제 정 : 2016. 5. 3.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학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금강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학부 구조조정이라 함은 대학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의 정책적 조정이나 학부(전공)의 자율적 조정을 통해 학부(전공) 정원 조정, 학부(전공)의 개폐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학부 구조조정의 대상은 본 대학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 학부(전공)에 따른다.

제4조(학부 구조조정의 원칙) 학부 구조조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

1. 대학교육과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2.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지침 이행
3. 대학발전계획에 의한 정책 수행
4. 대학재정의 효율적 운용

제5조(학부 구조조정위원회) ① 본 대학은 학부(전공) 구조조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의 학부구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처장급 보직자를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관리처장으로 한다.

제6조(주관부서) 업무분장규정에 의거하여 학과구조조정 업무는 기획관리처 기획조정팀에서 주관한다.

제7조(구조조정의 범위) 학부(전공) 구조조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 편제정원의 감축 및 증원
2. 경쟁력 비교우위학과(전공)의 신설 또는 폐지
3. 기타 구조조정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 등

제8조(구조조정 대상 학부(전공)의 분류) 구조조정 대상 학부(전공)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에서 정한 구조조정 대상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학부(전공)
2.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이 정책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부(전공)

제9조(구조조정 절차) 구조조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조정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2. 대상 학부(전공) 및 학부 의견 수립
3. 교무위원회 심의
4. 대학평의원회 심의
5. 결과 통보 및 관련 부서 후속조치 수행

제10조(구조조정 기준) ① 정원은 신입생 모집 경쟁력을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② 대학의 학부(전공) 통합, 폐지, 변경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당졸업년도 졸업생의 취업률 2년 연속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2. 재학생 충원율이 학교 평균에 미치지 못할 경우(단, 신설 학부(전공)의 경우는 예외)
3. 신입생 등록률이 전체 평균 80% 이하로 2년 연속 유지되는 경우
4. 기타 대학 특성화 등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학부(전공) 평가의 세부 기준 및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구조조정에 따른 이행 의무) ① 구조조정 대상 학부(전공)은 최종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제반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한다.

② 총장으로부터 구조조정 통보를 받은 학부(전공)의 교원은 학과 소속변경 배치, 면직 등 신분변동에 대한 대학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구조조정 대상 학부(전공) 교원이 자기개발 노력을 소홀히 하고 학부(전공) 운영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교원 지위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폐지 및 통합 학부(전공)의 교원 및 학생) ① 학부(전공) 구조조정에 따라 폐과가 결정된 학부(전공)의 전임교원은 다른 학과로 소속변경 할 수 있다.

② 폐지 또는 통합이 결정된 학부(전공)의 제적생은 졸업 시까지 기존 학부(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다른 학부(전공)으로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③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르며,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이 제정 규정은 2016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